

가. 사업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홍남지구확정사업
나. 시행지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라동, 홍은동 각 일부
다. 시행면적 170,000 평

라.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 1971. 6. 20.

주 관세도면을 서울특별시, 홍남지구 도시계획정리사업
추진위원회 사무소(서대문구 남가라동 32번지)에 비치하고 관계
인의 공람에 공한다.

1971. 4. .

서울특별시장

제3안

홍남지구 도시계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
수신 서대문구 남가라동 32 이상재 발신 시장
제목 등 건

1971. 4. 9 에 신청한 홍남지구 도시계획정리사업
기간 지정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및 별첨 시행령
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실시계
획인가 신청기간을 지정 하였습니다. 동의합니다.

첨부 공고문 사본 / 부.

제4안

수신 공보실장 발신
제목 등 건

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인가신청 기간을 지정공고
하였으므로 관보에 게재 하여 주사가 바랍니다.

첨부 공고문 사본 / 부

제5안

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시장

참조 단지 조성과장

서울시 41-1 (을)
1967. 4. 4. 승인

81
3-2

190mm x 268mm 면적지 400/㎡
초 단형 (150,000여 75

제목 동 건

! 단지 422.4-19489 (70.12.11) 에 대한 판권사항
입니다.

2. 당지에서 1971. 4. 8자로 신청접수한데에 대한 흥남
지구 도지구획정리 사업시행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
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실시계획
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하였기 보고 합니다.

첨부 위치표시 도면 및 관계조서 1부 끝